



제 418회 국회 (정 기 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차대조표 용어 정비〉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45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대차대조표 용어 정비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현정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7.
3. 회부연월일 : 2024.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129조).

Ⅲ. 검토의견

1. 대차대조표 용어 정비

개정안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 64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64조(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① 이 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사업보고서, <u>대차대조표</u> , 손익계산서 와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 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4조(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① --- ----- ----- <u>재무상태표</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① 조합 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 면 의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u>대 차대조표</u>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① --- ----- ----- <u>재 무상태표</u>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9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사 업연도마다 정기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u>대차대조 표</u> ,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 는 손실금의 처리 방법을 적은 문서 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9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 ----- ----- ----- <u>재무상태 표</u> ----- -----.

현행법은 결산관계 서류 중 하나인 대차대조표의 작성, 비치 및 제
출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재무제표(財務諸表) 구성 서류의 하나인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대차대조표일)의 기업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차변과 대변의 두 란으로 나누어 적정하게 표시하는 개괄표라는 의미를 가지는데¹⁾,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서는 재무제표 구성 서류로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²⁾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표 1] 재무제표의 구성

상법 및 동법시행령 ³⁾ 의 재무제표 구성 서류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재무제표 구성 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⁵⁾ 의 재무제표 구성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 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식

1) 정찬형, 상법강의(상), p. 1198, 2020. 2.

2) 「일반기업회계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회계처리기준)
2.17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상법 시행령」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① 법 제4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식(註釋)을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일반기업회계기준」

2.4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식을 포함한다.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첫째,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재무상태표라는 용어가 보다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하는 점이 있음.

둘째, 「국가회계법」은 2009년 제정법 시행부터 대차대조표 대신 재정상태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도 2009년부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공인회계사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셋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조제1항 등 유사 입법례⁶⁾⁷⁾⁸⁾에서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재무제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현금흐름표

3. 주식(註釋)

6)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조(결산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7) 「경찰공제회법」

제18조(예산 및 결산) ③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 재무상태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넷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재무제표 구성서류로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다섯째, 국회 법제실의 「알기 쉬운 법률용어」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¹⁰⁾에서 ‘대차대조표’를 정비 권고 용어에 포함하면서 순화용어로 ‘재무상태표’를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그 용어를 정비할 경우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문 의 처
02) 6788-5463

8) 「군인공제회법」

제17조(예산 및 결산)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국회 법제실, “알기 쉬운 법률용어 2020”, p.31, 2020. 12.

10)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부록: 정비 권고 용어)”, p.19, 2023. 12.